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언주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4276 발의연월일: 2024. 9. 25.

발 의 자:이언주·민병덕·민형배

이재관 • 이상식 • 정성호

문정복 • 이개호 • 정진욱

강준현 의원(10인)

제안이유

조국을 위해 몸을 바쳐 싸운 6.25참전용사 상당수가 고령으로 인해 경제적 어려움과 건강문제에 처해 있음에도 불구하고, 65세 이상 6.25 참전유공자에 대해 20만원의 참전명예수당을 지급하고, 보훈병원 진료 비를 60%만 감면해주는 등 참전유공자들에 대한 예우와 보상이 매우 부족한 실정임.

나라가 어려움에 처했을 때 헌신한 분들이 최소한의 삶을 영위할 수 없도록 최저생계비에도 턱없이 부족한 수당을 지급하고, 질병치료 또한 제대로 받을 수 없도록 방치한데는 국가적 책임이 크다는 비판 이 제기되고 있으며, 따라서 국가가 책임을 지고 참전유공자에 대한 소외감과 상대적 박탈감을 덜어주는 것이 절실히 필요한 상황임.

이에 참전명예수당을 최저생계비의 100분의 60 이상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지급하고, 75세 이상 참전유공자들에 대한 의료비를 국가가 전

액 지원해줌으로써 국가를 위해 헌신하신 참전유공자 어르신들의 사기를 높이고 영예로운 삶이 유지되도록 하고자 함.

주요내용

- 가. 65세 이상 참전유공자에게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7호에 따른 최저생계비 중 1인 가구에 해당하는 최저생계비의 100분의 60 이상에 해당하는 금액을 참전명예수당으로 지급함(안 제6조제7항).
- 나. 75세 이상인 참전유공자의 경우 병원진료비를 전액 감면하며, 그 감면된 비용은 국가가 부담하도록 함(안 제7조제1항).

법률 제 호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7항 중 "지급액 등은 대통령령으로"를 "지급액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7호에 따른 최저생계비 중 1인 가구에 해당하는 최저생계비의 100분의 60 이상으로"로 하고, 같은 조에 제8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⑧ 참전명예수당의 지급액·지급방법 및 그 밖의 지급에 관하여 필 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7조제1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75세 이상인 참전유공자의 경우에는 진료비용을 전액 면제한다.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혅 행 개 정 아 제6조(참전명예수당) ① ~ ⑥ 제6조(참전명예수당) ① ~ ⑥ (생 략) (현행과 같음) ⑦ 참전명예수당은 월액(月額) 으로 지급하며, 그 지급액 등은 -----지급액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 제7호에 따른 최저생계비 중 1 인 가구에 해당하는 최저생계비 의 100분의 <u>60 이상으로</u>----. ⑧ 참전명예수당의 지급액·지 <신 설> 급방법 및 그 밖의 지급에 관 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 으로 정한다. 제7조(의료지원) ① 참전유공자가 제7조(의료지원) 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설 치 · 운영하는 의료기관(「한국 보훈복지의료공단법 제7조에 따른 보훈병원을 포함한다)에 서 진료를 받는 경우 그 진료 비용은 본인이 부담하게 될 비 용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감면(減免)하 며, 그 감면된 비용은 국가가 부담한다. <단서 신설> -----. 다만, 75세 이상인 참전

	유공자의 경우에는 진료비용을
	<u>전액 면제한다.</u>
②・③ (생 략)	②・③ (현행과 같음)